

#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「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6조 제3항의 별표 14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소유하거나 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콘크리트구조물 폐기물 저장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안전기준)** ①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 저장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
항목	안전기준
1. 침하 또는 부상	구조적인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침하 또는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을 것
2. 경사	구조적인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경사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을 것
3. 활동(요동)	구조적인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흔들거림이 없을 것
4. 균열	관통균열이 없고, 균열면적율이 20%를 초과하지 않을 것
5. 삭제	
6. 박락 또는 층분리	박락 또는 층분리의 깊이가 25mm이하이고 박락 또는 층분리된 면적이 20%를 초과하지 않을 것
7. 철근노출	철근노출 면적율이 5%를 초과하지 않을 것
8. 누수	누수의 진행이 관찰가능한 상태가 아닐 것
9. 백태	백태 발생면적이 20%를 초과하지 않을 것
10. 파손	파손 깊이가 20mm 이하이고 파손면적이 10%를 초과하지 않을 것
11. 부속강재부식	부식 발생 면적이 30%를 초과하지 않을 것

② 제1항의 안전기준 중 제4호의 균열면적율 및 제7호의 철근노출면적율의 계산은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467호 「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」의 시행을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정한 「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」 중 제9장 "하수처리장"의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.

**제3조(안전검사)**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 저장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는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.

**제4조(안전검사의 방법)** ① 제3조에 따른 안전검사는 눈으로 확인하는 등의 외관검사를 말하며, 이에 따른 콘크리트구조물 검사항목은 제2조와 같다.

②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제3조에 따른 콘크리트구조물 폐기물저장시설 안전검사 결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저장폐기물의 누설 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검사항목 중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구분	콘크리트 강도	철근탐사 및 부식상태	기 타
검사항목	- 비파괴 시험(반발경도법, 초음파 등) - 파괴시험(코어채취법 등)	-배근간격 -피복두께 -철근부식도	-콘크리트 중성화깊이 -콘크리트 염화물함량

**제5조(사용제한 등)** ①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폐기물 저장시설로 등록하여 사용 중인 콘크리트구조물이 제4조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폐기물 저장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사용 중인 콘크리트 폐기물 저장시설의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이에 관한 사실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안전검사 증거 서류의 보관)**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안전검사 또는 정밀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 증거 서류는 콘크리트구조물 저장시설 현장에서 가까운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재검토기한)** 해양수산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